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관한 비교 연구

— UCITA 제2편의 규정체계를 중심으로 —

심종석*·오현석**

목 차

I. 서론	III. UCITA에서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
II.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V. 요약 및 결론

I. 서론

살피기에 현대계약법은 복잡다단한 경제·사회적 유동성에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크게 두 부류의 이정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어 진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제계약법규범의 법통일화 현상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법체계화 현상은 변모하고 있는 현대계약법의 경향에 대한 대별의 실체로서 인식된다.

이 같은 개별경향의 배경에는 상사적(商事的)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어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利害)를 적절히 균분(均分)하고 조정(調整)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과, 나아가 계약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전임강사(경영학박사·법학박사수료)

** 영진사이버대학 e-경영학과 조교수(경영학박사)

2 經營法律

당사자 간 계약책임을 강조하여 이의 원만한 이행을 통해 신속.민활한 상거래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이 공히 중시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체계화 현상은 전자[法統一化]에 대하여, 곧 계약의 목적에 있어 유형물품(visible goods)을 기저로 계약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의 국제통일계약법규범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법기능상 ‘보충적 역할’[gap-filling role]을 감당하고 있는 특성을 내재하는데, 이는 곧 상거래에 있어 대가관계에 임한 당사자 간 무형물품(invisible goods),¹⁾ 예컨대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²⁾를 당해 상거래의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 당해 계약내용에 대한 별단의 적용법(applicable law) 지정의 당위를 시사한다.

법체계화 현상의 일환으로서 그간 무형물품, 곧 컴퓨터 정보 그 자체 또는 컴퓨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생성(create).수정(modify).양도(transfer) 또는 인가(license)하는 약정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한 소위 ‘컴퓨터 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의 법리적.상무적 연구에 미국 실정법으로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³⁾) : 이하

1) 이하 본 고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무형물품(invisible goods) 또는 무체물,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의 용어를 달리 한정하지 않는 한, 특성상 동일한 의미로 의제하여 사용한다.

2) ① 본 고 범위 내에서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라 함은 컴퓨터로부터 또는 컴퓨터 이용으로 얻거나 또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UCITA, Sec. 102, (10).].

② 이 경우 전자적(electronic)이라고 함은 전기(electrical), 디지털(digital), 무선(wireless), 마그네틱(magnetic), 광학(optical), 전자마그네틱(electromagnetic),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진 기술과 결부된 것을 의미한다[UCITA, Sec. 102, (26).].

3) ① 법령[UCITA]에 있어서 ‘transaction’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번역되나 법률용어로서는 달리 ‘법률행위’로 번역된다. 법률행위(transaction)는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 소(訴)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transaction’에 포함된다. 따라서 ‘transaction’은 계약보다 그 의

‘UCITA’)이 그 주요한 분석도구가 되어 온 까닭은, 생각건대 동 법이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물’(subject matter with the contract)로 하여 성안된 계약법으로 그 선도적(先導的)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⁴⁾

요컨대 UCITA의 입법성과는 특별히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 간 무형물품으로서 컴퓨터 정보를 당해 상거래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 동 법이 ① 유형물품을 기저로 계약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의 국제통일계약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예견가능한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적 실익과, 아울러 ②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물로 취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적용법으로 UCITA를 지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계약당사자의 이해, 곧 상무적 실익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⁵⁾

본 고에서는 현대계약법의 추이에 비추어 이 같은 UCITA의 입법성가를 증시하여 계약의 성립과 조건에 관한 동 법 제2편의 규정체계를 연구범위로 당해 법적 기준과 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는

미가 넓다고 하겠다. ;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p.519. ② 연관규정으로 UCITA, Section 102, (7), (11), (26), (30), (44). 등.

4) UCITA의 제정경위와 입법연혁 등에 대한 개관은 다수의 선행 연구논문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기에 본 고에서는 일부 선행논문을 소개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① 권재열,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② 오병철, “UCITA상의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2., ③ 이충열,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9., ④ 한병완,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4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9., ⑤ 허해관, “국제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무역상무연구」, 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8. 등.

5) Gregory, V. L., “Problems Presented by the New Stat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Respecting the Use of Electronic Resources,” *ACRL 10th National Conference*, 2001. 03. ‘introduction’ .

4 經營 法律

바, 이를 위해 ① 우선 유형물품을 상거래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국제통일계약법규범,⁶⁾ 이를테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 국제상사계약에관한 일반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이하 'PICC'),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이하 'PECL')에 있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비교.검토하여 이하 계약의 목적물로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가지는 특성을 기존의 대상으로부터 명확히 분기(分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구하고,⁷⁾ ② 이로

6) 이하 기술의 편의상 '계약규범'이라 칭한다.

7) ① 특별히 본 고에서 -법통일화의 시각에서- CISG, PICC, PECL 등의 국제 통일계약규범을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취한 이유는 i) 개별 계약규범 공히 상당부분에서 동일한 입법취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ii) 이로부터 국제상사계약의 공통한 법리를 재구성함에 있어 법적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iii) CISG, PICC, PECL은 공히 연혁적으로나 입법적으로 CISG를 모체로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입법화되었다는 사실, iv) 특별히 CISG는 그간 동 협약에의 가입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대하여 2005년 3월 1일부 국내법화 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연유한다. ② 이에 개별 계약규범의 입법적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i) CISG는 국제적 계약법의 통일 또는 조화작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 협약이 주요 국가에서 비준을 통해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생략적으로 CISG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간 타협의 산물로서 양 법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시키는 데 성공한 국제적 통일법이라는 것과, 구속력 있는 실정의 법률로서 가지는 법적 효력 및 비교법적 작업의 결과로 수용된 법리의 보편타당성 등을 부각할 수 있다(상세는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overview'). ii) PICC는 국제협약이나 조국가적 입법과 같은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법리적 일반원칙으로써의 입법취지를 전체하고, 제반 규정내용의 법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부터 동 원칙은 CISG 등에 '보충법적 기능' [gap-filling role]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의 판결.판정 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상세는 UNIDROIT, *Text of the Unidroit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Black Letter Rules & Comments*, 'Introduction'. ;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Similar Rules for the Same

부터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UCITA의 ‘일반적인 계약체결’(formation in general), ‘청약과 승낙의 일반’(offer and acceptance in general), ‘전자적 대리인 및 정보권의 양도에 대한 법률효과’(legal effects for the electronic agents and releases of information rights),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의 승인요건’(adopting terms of electronic record), ‘귀속절차의 유효성, 상업적 합리성 및 귀속결정’(efficacy and commercial reasonableness of attribution procedure, determining attribution),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electronic message, when effective, effect of acknowledgement) 등의 규정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③ 그 결과로서 국내·외 전자상거래에 있어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하여 거래관계에 임한 당사자로 하여금 UCITA의 법리적 특성 및/또는 의의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이를 실무에 적의 반영할 수 있는 상무적 유의점을 결론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고는 컴퓨터 정보에 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대한 법리적 배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실무계를 향하여 당해 분야에 있어 상무적 적용가능성 및/또는 적용상 유의점을 적의 분별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는 바에 목적을 두었다.

Purposes?,” *Uniform Law Review*, 1996, pp.229~246. ;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 Bonnell, M. J., “UNIDROIT Principles 2004 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pp.5~40.). iii) PECL은 유럽의 계약법상 일반원칙을 법전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PICC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법률은 아니고, 다만 유럽 역내[EU] 회원국 간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부차적으로 계약법의 법리적 기초와 통일적 해석, 각국 간 법원 판결·판정 시 지침, 역내 법체계 간 타협을 구할 수 있는 역할, 향후 유럽통일계약법전의 입법적 기반 등을 결부하고 있다(상세는 Lando,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I, Part II,”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11, ‘introduction’).

Ⅱ.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청약의 기준

(1) 청약의 요건과 방법

CISG⁸⁾에서는 유효한 청약의 기준으로써 당해 의사표시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상거래 제의가 ‘충분히 확정적’(sufficiently definite)이어야 하며,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에 구속된다는 구속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함에 두고 있다.⁹⁾ 이 경우 구속의 의사표시가 없는 청약은 단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make offers)으로 간주되는 까닭에, 청약의 유인은 법률사실로서 승낙의 존재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청약과 구별된다.

한편 PICC¹⁰⁾에서는 청약의 기준에 관하여 CISG와 동일한 규정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나, 달리 상거래 제의의 대상, 즉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또한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상이한 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¹¹⁾ 곧 청약은 충분

8) ① 본 고 제출 시까지 CISG의 계약국(contracting state)은 우리나라를 포함 총 6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동 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CISG 제99조 (2)에 의거 2005년 3월 1일 부 국내법화 되었다. 따라서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점하게 되며, 이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 CISG가 우선 적용된다. CISG 제7조 (2)항 소정의 자치적 해석의 원칙은 특별법으로서의 CISG의 적용가능성을 확정하며, 이에 일반법으로서의 국내 민·상법의 적용가능성을 그만큼 축소하고 있다. ② 계약국별 현황, 가입일, 효력발생일 등 상세는 「www.unilex.info」에서 Hyperlink에 따라 CISG, Instrument, Contracting States.

9) CISG, Art. 14., (1).

10) ① 본 고 제출 시까지 PICC [UNIDROIT]의 회원국 수는 우리나라를 포함 총 60개국이다. 「www.unidroit.org/english/members/main.htm」. ② PICC (2004) 원문 및 해제는 「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main.htm」.

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CISG와 구분되는 법기술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PICC는 계약당사자 간 청약의 기준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당사자 자치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CISG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규정체계를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사자 간 계약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그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 PECL¹²⁾은 CISG 및 PICC에 견주어 청약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안은 타방의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의도되고, 계약을 구성하기에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한요건 없이 청약은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 또한 광고나 카탈로그에 의하여 '직업적 공급자'(professional supplier)가 행하는 물품진열을 통해 제시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제안은 물품의 재고 또는 공급자의 용역 공급능력이 소진되는 때까지는 그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공급한다는 청약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여타 계약규범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¹⁴⁾

11) PICC, Art. 2.2.

12) PECL의 제정연혁에 관한 상세는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Study of the systems of private law in the EU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and the creation of a European Civil Code," *Working Paper, Legal Affairs Series*, JURI 103 EN, 1999. 6. Chap. III, pp.127~136. ; Lando, *op. cit.*

13) PECL, Art. 2:201.

14) 상세는 심종석, "유럽계약법원칙(PECL)의 일반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CISG, PICC 규정과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03.

(2) 청약의 철회 또는 취소

CISG와 PECL은 청약의 철회와 취소를 공히 구별하고 있는데, 우선 CISG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청약의 취소는 이미 청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⁵⁾

PICC에서는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그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청약이 취소불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청약의 취소에 대하여는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으나, 다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당해 규정에서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여하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reasonable)¹⁶⁾이고,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¹⁷⁾

요컨대 PECL은 PICC의 규정내용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¹⁸⁾ 다만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부가요건으로 ① 청약에서 그것이 철회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② 승낙을 위한 확정기간을 정한 경우, ③ 피청약자가 청약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가 청약을 신뢰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¹⁹⁾

15) CISG, Art. 15, (2)., 16. ; PECL, Art. 1:303, (2), (5), (6).

16) 본 고에서 사용하는 'reasonable' 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기간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당한' 으로, 기타 당사자의 행위·용태에 관련해서는 '합리적' 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7) PICC, Art. 2.3 ~ 2.4. ; 연관규정으로서 CISG, Art. 16.

18) PECL, Art. 2:202, (1), (2).

19) PECL, Art. 2:202, (3).

2. 승낙의 기준

(1) 승낙의 요건과 방법

CISG 및 PICC에서는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추가.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담고 있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the offer)이자 또한 대응청약(counter-offer)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완전일치의 요건’[mirror image rule]을 완화하여 계약의 성립을 보다 용이하게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materially)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담고 있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고 배려하고 있다.²⁰⁾

PECL에서는 변경된 승낙의 효과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곧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하는 피청약자의 응답은 거절이고 또 ‘새로운 청약’(new offer)이라고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청약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 또한 계약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²¹⁾ 다만 청약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① 동의한 응답이 청약이 명시적으로 청약의 내용에 대한 승낙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② 청약자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③ 피청약자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에 대한 청약자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낙하고 그 승낙이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²²⁾

20) CISG, Art. 19, (2). ; PICC, Art. 2.11, (2).

21) PECL, Art. 2:208, (1), (2).

22) PECL, Art. 2:208, (3).

10 經營法律

요컨대 CISG는 청약과 승낙체계에 의함이 없는 계약의 성립을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PECL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²³⁾

한편 CISG에서는 약관의 충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²⁴⁾ PICC에서는 표준약관(standard terms)²⁵⁾에 따른 계약체결, 의외의 조건, 표준약관과 비표준약관의 충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²⁶⁾ 요컨대 PICC는 약관의 충돌에 따른 규정을 보유하여 CISG를 보충하고 있다.²⁷⁾

PECL에서는 일반약관(general conditions)이 실질적으로 상호 공통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반약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구속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 경우와 당해 계약에 구속될 의도가 없음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²⁸⁾ 아울러 승낙은 청약과 그 방식에 있어

23) ① PECL, Art. 2:211. ② 예컨대 상거래 관행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유효한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곧 당사자 간의 합의의 전제로 혹은 상거래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매수요청 내용에 미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연관규정으로 서 CISG, Art. 18, (3).]. ; 심종석, 전제논문, 20~21면.

24) 다만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연관규정으로서 CISG, Art. 18, (3)., Art. 19, (1).

25) 용어의 사용에 있어 PICC는 표준약관(standard terms : Art. 2.19.)으로, PECL은 일반약관[general conditions : Art. 2:209, (3).]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으나, 규정내용은 용어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생각건대 이는 현대계약에 있어 부합계약의 보편성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PECL의 경우 일반약관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지 아니한 계약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계약내용의 확정 여부에 있어 개별적 합의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6) PICC, Art. 2.19~2.22.

27) Whincup, M. H., *Contact Law and Practice : the English System and Continental Comparisons*, Kluwer Law Int'l, 1996. paras. 2.15.~2.26. ; Schmitthoff, C. M., *Export Trade*, 10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0. p.64. ; DiMatteo, L. A., *The Law of International Contracting*, Kluwer Law Int'l, 2000. p.201.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어느 경우라도 유효하게 합의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규범 공히 일치하는 규정내용을 보이고 있다.²⁹⁾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CISG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reaches)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청약과 승낙에 관한 여타의 관련 조문에서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도달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PICC 또한 CISG의 규정내용을 계수하여 도달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PECL은 통지요건에 관하여 내용상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곧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통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Ⅲ. UCITA에서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

1. 일반적인 계약체결

UCITA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체결에 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해제하면 다음과 같다.³¹⁾ 우선 ① 계약서

28) PECL, Art. 2:209, (1) ~ (2).

29) CISG, Art. 18. ; PICC, Art. 2.6, (1). ; PECL, Art. 2:204.

30) PICC, Art. 1.9. ; PECL, Art. 1:303.

31) 계약의 성립과 조건에 있어 공식적인 요건에 관한 UCITA의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① 계약수수료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지불을 요구하는 계약은 i) 이행을 행할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계약서가 언급하는 대상물 또는 저작물(copy)을 합리적(reasonable)으로 나타내 주는 기록물(record)의 진정성을 밝힌 경우와 [이 경우 저작물(copy)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매개체(medium)이고 동 매개체로부터 직

12 經營法律

는 청약과 승낙 또는 양당사자의 행동 및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³²⁾의 작업 등 약정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② 계약당사자가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 i) 계약서의 작성시점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ii) 1개 이상의 조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합의하여야 할 대상이거나, iii) 양당사자의 기록물(record)이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일방이 조건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약정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③ 1개 이상의 조건이 미결로 남아 있거나 또는 합의하여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작성하였고, 또한 합리적 구제에 임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정기

접적으로 또는 기계 장치의 도움으로 인지(perceived), 재현(reproduce), 전달(communicated), 사용(used),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록물(record)이라고 함은 유형의 매개체에 각인되거나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UCITA, Sec. 102, (20), (54).], ii) 당해 약정(agreement)이 1년 또는 그 이하로 합의된 기간 동안 또는 당해 계약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의지대로 종료할 수 있는 라이선스(license)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나 변호에 의하여 이행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경우 계약(contract)은 UCITA 및 다른 적용 가능한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를 말하며, 약정(agreement)은 계약과 달리 구분하여, 당사자가 그들의 언어로 또는 다른 경우 이행과정, 협상과정 및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관행을 포함한 의미로 사실상 합의된 양당사자의 매매계약을 지칭한다. 한편 라이선스(license)는 피양도자가 허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정보(권)에 접속(access), 사용(use), 분배(distribution), 이행(performance), 수정(modification), 재현(reproduction)을 허여하지만, 허여된 접속 또는 사용을 명백히 제한하거나 당해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보다 적게 허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 UCITA, Sec. 102, (17), (20), (40).], ② 그리고 UCITA와 타법률과의 관계, ③ 계약이행에 관한 제한요건 등이다. ; UCITA, Sec. 201.

- 32) ①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은 전자문서 또는 이행에 대하여 조치 또는 회신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검토 또는 조치없이 그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나 이행에 답변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한다. ② 이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록 컴퓨터에 직간접적으로 일련의 말이나 지시가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UCITA, Sec. 102, (27), (12).

준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무효의 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④ 다만 계약은 적용범위에 대한 용어 등 중대한(material) 조건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없는 경우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양당사자는 정보(information)³³⁾의 모든 저작물(copy) 및 접속자료(access materials)를 타방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타방의 동의를 얻어 이를 파기하여야 하며, 양당사자는 이행물이 인수 및 수락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익도 보유함이 없이 재인도되었던 반송물에 대하여 지불한 어떠한 계약수수료(contract fee)³⁴⁾에 대하여도 반환받을 자격을 향유하게 되나, 다만 계약상 사용조건이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근원(source)으로부터 영수·취득된 정보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등이다.³⁵⁾

2. 청약과 승낙의 일반

UCITA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은 그 수단의 제한없이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매개체(medium)에 의해서라면 승낙을 유인한다고 우선 전제하고, 신속 또는 즉시 인도를 위하여 저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주문이나 기타 청약은 선적을 즉시 약속하거나 또는 즉시 선적에 의하여 승낙을 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요건으로서 불일치한 저작물의 선적의 경우 허여권자(licensor)³⁶⁾가

33) UCITA에서는 정보(information)와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는 ‘자료, 텍스트, 이미지, 소리, 마스크 작업 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록 컴퓨터에 직·간접적으로 일련의 말이나 지시가 사용되는, 곧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것의 수집 및 집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컴퓨터 정보는 앞선 전제각주에서 기 살핀 바와 같다.]. 본 고에서는 이하 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UCITA, Sec. 102, (10), (35).].

34) 계약상 지불하게 될 가격(price), 수수료(fee), 임차료(rent), 로열티(royalty)와 기타 지불하여야 할 여타금액을 총칭한다[UCITA, Sec. (18).].

35) UCITA, Sec. 202., NCCUSL, 「UCITA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2002. Comment 1~6. to Sec. 202.

14 經營法律

당해 물품이 적의(seasonably)³⁷⁾ 청약되어졌음을 피허여권자에게 통지(notify)³⁸⁾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³⁹⁾

그런데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만약 요구되어진 이행을 행하는 것이 승낙의 합리적인 형태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또는 이행을 통보받지 못한 청약자는 당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그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한편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⁴⁰⁾로 구성된 청약이 당해

36) UCITA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① 허여권자(licensor)는 UCITA가 적용되는 약정(agreement)에 의거하여 컴퓨터 정보나 정보권리(information rights)에 의 접속 또는 사용에 있어서 권리를 이전 또는 생성하기 위하여 약정에서 의무가 부여된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정보 또는 정보권리의 교환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당해 정보, 정보권리 또는 그것이 제공하는 접속에 대하여 허여권자가 된다. ② 피허여권자 licensee)는 UCITA가 적용되는 약정에 의거하여 컴퓨터 정보에 대한 접속 또는 이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UCITA, Sec. (40) ~ (42).].

37) 적의(seasonable)라고 하는 의미는 합의된 기간 내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reasonable) 기간 내를 의미한다[UCITA, Sec. 102, (58).].

38) 통지하다(notify)는 의미는 타방이 그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ordinary)으로 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UCITA, Sec. 102, (48).].

39) UCITA, Sec. 202., Comment 2~3.

40) ① 전자문서[elecetronic message]라 함은 타인에게 또는 전자적 대리인에게 통신의 목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저장 생성 또는 전송되는 기록물이나 전시물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록물(record)이라고 함은 유형의 매개체에 각인되거나 전자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라 총칭된다[UCITA, Sec. 102, (28), (54).]. ② 국내 실정법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또한 ‘전자서명법’에서도 그 정의는 동일하다(제2조 제1항). ③ 한편 국제상사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국내 실정법에서의 전자문서에 상응하는 용어인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로써, 즉 특별한 제한 없이 전자자료교환(EDI), 전자우편(e-mail),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 등을 포함한 전자적·광학적 기타 유사수단으로 작성·발신·수령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Art. 2, (a).]. ④ 본 고에서는 제반 국제상사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가 국내 실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의미와 서로 상통하고 당해 규정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와 상호 대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이하 전자

청약을 수락한 전자문서를 적절하게 불러올 수 있음을 조건으로 계약은 전자적 승낙을 수령한(received) 때, 또는 답변에 이행의 착수, 완전이행 또는 정보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 이행이 접수되거나 접속이 가능하고 필요한 접속자료가 수령된 때 체결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⁴¹⁾

이 경우 수령(receipt)의 기준은 ①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를 인수(taking delivery⁴²⁾)하는 것, ② 통지(notice)에 대하여 i)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 ii)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스템에 인도하여 입수가능한 것 등이다. iii) 만약 합의된 장소나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거소(residence)나 계약이 체결된 영업소(place of business) 또는 그러한 종류의 통신물 수령장소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타의 장소에 인도하는 것, 그리고 전자통지(electronic notice)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⁴³⁾이나 당해 시스템의 주소에 수령인이 그 유형의 시스템에

문서[data messages]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⑤ 제반 국제기구 및 각국 실정법에 의해 정의되어진 전자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법규범을 참고할 수 있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Chap. III. ;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 e3. ;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 Art. 11.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 Sec. 2, (7), (13).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Sec. 106, (4). ; 일본 '電子署名及び認證業務に關する法律', 第2條 ; 말레이시아 'Digital Signature Bill(1997),' Art. 2. 등.

41) UCITA, Sec. 203., Comment 4~5.

42) 저작물(copy)과 관련한 인도(delivery)는 소유나 관리를 자발적으로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UCITA, Sec. 102, (24).].

43) ①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은 정보를 작성(creating), 생성(generating), 송부(sending), 수령(receiving), 저장(storing), 현시(display), 처리(processing)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총칭한다[UCITA, Sec. 102, (36).]. ② 이 경우 송부하다(send)라는 용어는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또는 별단의 합의에 따라 규정되고, 적절히 언급되거나 또는 지시된 비용으로 메일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운송인의 기록물에 보관하고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 또는 재생을 위하여 기록물을 인도하거나, 전송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의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등이다.⁴⁴⁾

(1) 승낙의 조건

승낙이 청약과 실질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청약의 조건과 다르거나 또는 청약에 있지 않은 중요한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승낙은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유를 구성한다.

한편 명확하고 적정한 승낙의 표현은 설령 그 승낙이 청약 조건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으로 기능하는데, 다만 그러한 승낙이 동 청약을 중대하게(materially)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런데 승낙이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다만 ① 일방이 타방의 청약 또는 승낙에 대하여 동의를 표명하는 것과 같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하는 경우, ② 양당사자의 행위 등 기타 모든 상황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합리적(reasonable)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⁴⁵⁾

요컨대 UCITA에서의 승낙의 조건은 승낙이 청약과 상이하나 동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은 청약의 조건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두고 있는데, 다만 청약에 있는 조건과 상충되는 승낙의 조건은 계약의 일부로서 편입되지 못하며, 승낙에 있

당해 메시지가 수령자가 사용하거나, 달리 지정되었거나 송부된 종류의 통신문을 수령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된 유형의 시스템으로부터 처리되거나 또는 인지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만약 적절히 송부되었다면 도착하여야 할 기간 내에 수령하는 것은 적절한 발송의 효과를 보유한다[UCITA, Sec. 102, (59).].

44) 다만 이 경우 수령인이 그 종류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장소 또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또는 달리 지정하였거나 또는 알려 주고, 그 송부자는 당해 통지가 그 장소로부터 접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요건이 부가된다[UCITA, Sec. 102, (52).].

45) UCITA, Sec. 204, (a) ~ (c).

어서 중대하지 않은 추가조건은 다만 추가조건을 위한 여타의 제안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 간 제안된 추가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달리 청약자가 제안된 조건을 수령하기 전에 또는 수령 후 상당한(reasonable) 기간 내에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⁴⁶⁾

(2) 조건부 청약 또는 승낙

원칙적으로 UCITA에서는 타방이 조건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청약이나 승낙은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약 및 승낙이 표준서식(standard forms)⁴⁷⁾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한 형식이 조건적이라면, 표준서식을 제안하는 일방의 조치가 조건부와 일치만하고 당해 내용의 조건이 수락될 때까지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당해 약정의 혜택을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표준서식에 있는 조건부 내용은 계약의 성립을 배제한다.⁴⁸⁾

(3)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청약과 승낙

UCITA에서는 전자적 대리인과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개인은 당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본인이 수락거부 또는 구두로 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6) UCITA, Sec. 204, Comment 3~4.

47) 표준서식은(standard forms) 거래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작성되고, 가격, 수량, 지불방법, 표준선택사항 중의 선택이나 인도시기나 인도방법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에 의하여 협상된 용어의 변경없이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록된 기록물을 총칭한다[UCITA, Sec. 102, (60).].

48) 연관규정으로서 UCITA, Sec. 208-209.

3.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

(1) 정보권의 양도

영미법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즉 의사 합의가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미법상 합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약인(consideration)⁴⁹⁾을 수반한 것이거나 또는 서면(writing)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UCITA에서는 양도(release)⁵⁰⁾에 관하여 약인없이 유효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양도자가 동의를 표방함으로써 약정하고 양도된 정보권(informational rights)을 나타내는 기록물인 경우, ② 금반언(estoppel), 묵시적 라이선스나 기타 법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

49) 약인(consideration)이라 함은 약속에 관하여 약속자(promisor)에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약자(promisee)가 부담하는 손실(detriment)을 의미한다. 약인은 i) 약속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필요성은 없으나 법률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ii)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현재의 작위 또는 부작위든 장래의 작위 또는 부작위이든 무관하나 과거의 것은 약인이 될 수 없다. iii) 약인은 적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 약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무효이다. iv) 약인은 수약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약속에 대한 대가(price)라고 통칭된다. ; Schaber, A. D., Rohwer, C. D., *Contract*, 3th, West Wadsworth, 1999, pp.2~4.

50) ① 양도(release)의 의미는 일방이 정보(information) 또는 정보권(informational rights)의 사용을 반대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제한 할 구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계약상 당해 정보나 정보권을 타방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② 이 경우 정보권(informational rights)이라고 함은 특허권(patents), 저작권(copyrights) ‘마스크 작업’(mask works), 영업비밀(trade secrets), 상표권(trademarks), 홍보권(publicity rights)과 관련한 법에 의하거나, 계약과 무관하게 정보에 있어서 권리소유자의 이익에 기초로 한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배제하는 권리를 부여한 여타 법률에 의거하여 발생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통칭한다[UCITA, Sec. 102, (38), (55).].

경우로 두고 있다.⁵¹⁾ 다만 후자의 경우 당해 양도가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양도를 허여한 자 또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는 제외하고- 양도를 인수한 자에 의하여 양도를 허여한 후 긍정적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양도는 양도된 정보권의 기간 동안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⁵²⁾

(2) 기록의 승인요건

일방이 기록물(record)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으로서 표준서식을 포함한 기록물의 제반 조건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찬가지로 기록물의 조건이 양당사자가 그들의 약정될 사후 기록물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로 표현되어지고 이행 전 또는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기록물 또는 그것의 저작물을 검토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행 또는 사용을 시작한 후 채택될 수 있다.⁵³⁾

또한 일방이 기록물의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조건은 일방이 그 기록물에 있는 개별조건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데, 다만 당해 조건이 UCITA 규정 체계내의 또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⁵⁴⁾

(3) 행위에 의한 계약조건의 형식

계약이 양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 계약조건은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조건의 약인, 이행과정, 거래과정, 상관습(usage of trade),⁵⁵⁾ 양당사자의 성격, 교환된 기록물, 관련된

51) UCITA, Sec. 207, (a).

52) UCITA, Sec. 207, Comment 3.

53) 연관규정으로서 UCITA, Sec. 202, (e).

54) UCITA, Sec. 208, (3)., Comment 2~4, 7. ; 유통허가(mass-market license)에 관한 제한요건에 대해서는 UCITA, Sec. 208, Comment 1~5.

정보 또는 정보권 및 기타 모든 관련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양당사자가 계약의 기록물을 입증하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타방의 조건이 수록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귀속절차의 유효성 및 귀속결정

1) 귀속절차의 유효성 및 상업적 합리성

귀속절차(attribution procedure)⁵⁶⁾와 관련한 합리성(reasonableness)⁵⁷⁾ 등의 효력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55) 상관습(usage of trade), 곧 무역관행은 장소·직업·무역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관련 준수되어야 할 기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준수의 규칙성을 갖춘 거래의 관행이나 방법을 의미한다[UCITA, Sec. 102, (65).].

56) ① 귀속절차(attribution procedure)는 현시(display), ‘전자적 진정성’(electronic authentication), 메시지(message), 기록(record) 또는 이행(performance)이 특정인의 것인지 또는 정보의 변경이나 오류를 적발해 내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용어는 단어나 숫자(numbers), 암호화(encryption)나 회수(callback)나 여타 도착(acknowledgement)을 확인하는데 알고리즘(algorithm)이나 다른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절차 또한 포함한다. ② 이 경우 진정하다(authenticate)라 함은 서명하는 것 또는 기록에 서명할 의향으로 또는 그러한 기록을 언급하거나, 첨부하거나, 포함시키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적 상징, 소리, 메시지 또는 그 과정을 이행하거나 또는 채택하는 등 일체를 의미한다[UCITA, Sec. 102, (5), (6).].

57) 앞서 살핀 바, CISG에서는 신의칙(good faith)에 의제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합리성(reasonableness)이라는 개념을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 견해[說]에 따라 그 개념을 살피면, i) ‘CISG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그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자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당사자 간의 규칙’(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Manz, 1986, n.41.), ii) ‘분별력 있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당사자의 윤리적 기준’ [Frans J. A. van der Velden,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 The Hague Convention 1964 and the UNCITRAL Uniform Sales Code 1980,” (Some Main Items Compared, Voskuil & Wade eds.), *Hague-Zagreb Essay 4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Hague Nijhoff, 1983, p.52., n.2.], iii) ‘합리성의 적용기준은 당해 처지하에서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CISG 내에 기초하고 있거나 적어도 현재 적용되는 여타 실정의 법체계하에서의 기준’ (Bonell, *Article 7 : Interpretation*,

일임하고 있는데, 다만 당해 결정에는 ① 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귀속 절차는 당해 법 또는 규칙의 범위 내 거래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②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과 유효성은 절차의 목적과 양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 동의하였거나 채택한 때의 '상업적 사정'(commercial circumstances)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 내 명시하고 있다.⁵⁸⁾ 다만 귀속절차는 사정에 의거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여하의 보안장치(security device)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2) 귀속결정

'전자적 진정성'(electronic authentication), 현시(display), 메시지(message), 기록(record) 또는 이행(performance)은 그것이 당해인의 행위이거나 그의 전자적 대리인이라면, 또는 당해인이 대리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구속되어질 경우 그 당사자에게 당연 귀속된다. 곧 전자적 진정성, 현시, 메시지, 기록 또는 타방에 대한 이행의 귀속에 의존하는 당사자가 귀속을 확립하는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당해자(person)⁵⁹⁾의 행위는 양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었거나 채택된 또는 법에 의하여 확립된 귀속절차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해자에게 돌려지는 전자적 행위의 효과는 전자적 행

Gap-filling, in Bianca-Bonell Commentary, Milan Giuffre, 1987, pp.81 ~ 82.), iv) '당해 국제상거래에서 통상적이고도 수용 가능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Honold, *op. cit.*, p.101.), v) '당사자 간 확립한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는 CISG 제9조의 접근방식에 기초한 계약적 의무의 기준' (Honold, *ibid.*) 등으로 설명된다.

58) UCITA, Sec. 211, Comment 4.

59) 당해자(person)의 범위는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부동산(estate), 기업신탁(business trust), 신탁(trust), 동업자(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협회(association), 합작투자(joint venture), '정부의 하부조직' (governmental subdivision), 대행기관(instrumentality) 또는 대리(agency), 공기업(public corporation),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주체를 총칭한다[UCITA, Sec. 102, (50).].

위의 생성(creation), 이행(execution) 또는 채택(adoption) 시점에서, 만약 약정이 있는 경우 양당사자의 약정시 또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진 바대로 당해 문맥으로부터 결정된다고 추보하고 있다.⁶⁰⁾

한편 귀속절차가 ① 전자적 진정성, 현시, 메시지, 기록 또는 이행에 있어서의 오류(errors) 또는 변경(changes)을 확인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② 그것이 양당사자에 의하여 합의 또는 채택되거나 법의 의하여 이루어졌고, ③ 일방이 그 절차에 준수하였으나 타방이 그러하지 않았고, ④ 이에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타 당사자가 이행한 변경이나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불이행의 효과는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른 한편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을 한 당사자가 타방에 우선하여 그러한 오류나 변경의 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⁶¹⁾

(5) 전자적 오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전자적 오류’(electronic error)는 그러한 실수를 탐지(detect), 수정(correct) 또는 회피(avoid)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consumer)⁶²⁾가 생성한 전자문서상의 오류를 말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⁶³⁾에

60) UCITA, Sec. 211. (1) ~ (3).

61) UCITA, Sec. 212, (d), Comment 5.

62) ① UCITA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비자(consumer)는 개인이 계약시점에서 주로 개인적, 가족 및 가사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정보나 정보권리를 허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농업, 사업운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투자관리 이외의 관리 등 전문적, 상업적 목적으로 권리를 허여받은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UCITA, Sec. 102. (15).]. ② 이에 반하여 상인(merchant)은 다음을 포함한다. i) 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정보나 정보권을 다루는 자, ii) 직업상 거래에 관여되는 사업관행이나 정보에 관한 당해 분야에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iii) 당해 거래에 관련된 관행이나 정보에 특이한 기술이나 지식이 직업상 그러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대리인(agent), 중개인(broker) 또는 기타 중간자(intermediary)의 고용에 기여되는 자 등이다[UCITA, Sec. 102. (45).].

63)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이전에 검

있어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소비자가 전자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제한요건으로서 ① 소비자가 당해 오류를 신속히 인지한 경우에 있어 i) 그 오류를 타방에게 통지한 경우 ii) 타방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타방으로부터 받은 적절한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그 정보의 모든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와 ② 소비자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정보로부터 혜택을이나 가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정보나 혜택을 제3자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등을 부가하고 있다.⁶⁴⁾

4.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의 수령은 당해 전자문서의 수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달하였을(received) 때 유효하다. 그렇지만 전자문서의 전자적 수령은 당해 전자문서가 도달은 되었으나, 그 자체로 발송된 내용물과 도달된 내용물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실무적용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⁶⁵⁾

IV. 요약 및 결론

현재까지 UCITA는 컴퓨터 정보거래에 관한 한 구체적이고도 진일보한 계약법원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모방입

토되지 아니한 거래로 일방 또는 쌍방의 ‘전자적 조치’ (electronic actions)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래를 말한다[UCITA, Sec. 102, (7).].

64) UCITA, Sec. 213, Comment 2~4.

65) UCITA, Sec. 214.

법에의 표본으로서 그 시사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취지에서 UCITA의 법리해석 및 규정체계 그리고 그 실무적용상의 폭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컴퓨터 정보를 계약의 내용으로 국내·외 거래관계에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 간 실제적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못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UCITA상 계약의 성립과 조건에 주안점을 둔 본 연구는 그간 UCITA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범위를 확장함에 있어, 아울러 향후 유관한 논제하에서 심도있는 비교법적 및/또는 법리적·상무적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주안점을 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하 다음과 같다.

1. 계약규범하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① CISG에서는 당해 의사표시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상거래 제의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며,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에 구속된다는 구속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함에 유효한 청약의 기준을 두고 있다. PICC에서는 특별히 상거래 제의의 대상, 즉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의 제한이 없다. 이는 신속·민활한 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로 간주된다. PECL은 CISG 및 PICC에 견주어 청약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유하여 여타 계약규범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한요건 없이 청약은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청약의 추정사실을 부가하고 있는 점이다.

② CISG와 PECL은 청약의 철회와 취소를 공히 구별하고 있는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청약의 취소는 이미 청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PICC에서는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일부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PECL은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부가요건으로 청약에서 그것이 철회될 수 없음을 지시한 경우, 승낙을 위한 확정기간을 정한 경우, 피청약자가 청약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가 청약을 신뢰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③ CISG 및 PICC에서는 의도된 승낙하에서 추가·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담고 있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또한 대응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성립을 보다 용이하게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청약이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담고 있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고 배려하고 있다. PECL에서는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피청약자의 응답은 거절이고 또 새로운 청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청약에 대한 확정적 응답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승낙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 또한 계약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타 계약규범에 비하여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④ CISG와는 달리 PICC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체결, 의외의 조건, 표준약관과 비표준약관의 충돌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PECL에서는 일부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일반약관이 실질적으로 상호 공통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⑤ CISG, PICC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PECL은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통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2. UCITA에서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대하여

① UCITA에서는 당사자의 확정적 의사를 담보로 일반적인 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규정으로서 계약은 조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합의하여야 할 대상이거나, 양당사자의 기록물이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일방이 조건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약정이 모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은 전자 문서를 포함하여 그 수단의 제한없이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매개체에 의해서라면 승낙을 유인한다고 하고, 신속 또는 즉시 인도를 위하여 저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주문이나 기타 청약은 선적을 즉시 약속하거나 또는 즉시 선적에 의하여 승낙을 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일치한 저작물이 선적된 경우 허여권자가 당해 물품이 적합하게 청약되었음을 피허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② 승낙의 조건으로서 승낙이 청약과 실질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는 청약의 조건과 다르거나 또는 청약에 있지 않은 중요한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승낙은 반대청약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승낙이 동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한 승낙의 표현은 설령 그 승낙이 청약의 조건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으로 기능한다. 곧 UCITA에서의 승낙의 조건은 승낙이 청약과 상이하나 동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은 청약의 조건에 기초하여 체

결되는 것으로 두고 있다. 한편 조건부 청약 또는 승낙에 대하여 UCITA는 원칙적으로 타방이 조건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청약이나 승낙은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당해 약정의 혜택을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준서식에 있는 조건부 내용은 계약의 성립을 배제한다.

③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UCITA에서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과 그 조건에 있어 정보권의 양도는 약인 없이 유효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기록의 승인요건에 대해서는 일방이 기록물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으로서 표준서식을 포함한 기록물의 조건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록물의 조건이 양당사자가 그들의 약정될 사후 기록물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로 표현되어지고 이행 전 또는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기록물 또는 그것의 저작물을 검토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④ 행위에 의한 계약조건의 형식에 대하여 계약이 양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 계약조건은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조건은 모든 관련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다만 양당사자가 계약의 기록물을 입증하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타방의 조건이 수록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귀속절차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효력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일임하고 있고, 귀속절차는 사정에 의거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여하의 보안장치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귀속결정은 전자적 진정성을 비롯한 요건이 당해인의 행위이거나 그의 전자적 대리인인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귀속절차가 전자적 진정성에 상당하는 이행에 있어 오류 또는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준한 경우 불이행의 효과는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전자적 오류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있어 소비자는 일부 제한요건을 전제로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서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자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

28 經營法律

다.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자문서의 수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달하였을 때 유효하다.

[참고문헌]

- 권재열,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심종석, “유럽계약법원칙(PECL)의 일반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CISG, PICC 규정과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 오병철, “UCITA상의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이충열,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한병완,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4권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 허해관, “국제전자정보거래에 관한 입법동향”, 「무역상무연구」, 제2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Bonell, M. J., *Art.7 : Interpretation, Gap-filling, in Bianca-Bonell Commentary*, Milan Giuffre, 1987.
- ,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Similar Rules for the Same Purposes?,” *Uniform Law Review*, 1996.
- , “UNIDROIT Principles 2004 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orm Law Review*, 2004.
- DiMatteo, L. A., *The Law of International Contracting*, Kluwer Law Int'l, 2000.

-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Study of the systems of private law in the EU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and the creation of a European Civil Code," *Working Paper*, Legal Affairs Series, JURI 103 EN, 1999.
- Frans J. A...van der Velden,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 The Hague Convention 1964 and the UNCITRAL Uniform Sales Code 1980," (Some Main Items Compared, Voskuil & Wade eds.), *Hague-Zagreb Essay 4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Hague Nijhoff, 1983.
- Gregory, V. L., "Problems Presented by the New Stat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Respecting the Use of Electronic Resources," *ACRL 10th National Conference*, 2001.
-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Lando,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I , Part II,"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UCITA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2002.
- Schaber. A. D., Rohwer, C. D., *Contract*, 3th, West Wadsworth, 1999.
- Schmitthoff, C. M., *Export Trade*, 10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0.
- 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Vienna Manz, 1986.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UNIDROIT, *Text of the Unidroit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Black Letter Rules & Comments*, 2002.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2004)*, 2004.

Whincup, M. H., *Contact Law and Practice : the English System and Continental Comparisons*, Kluwer Law Int'l, 1996.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

‘Digital Signature Bill’(1997)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E-Sign)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1997)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www.unilex.info」

「www.unidroit.org/english/members/main.htm」.

「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main.ht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ract Formation and Terms
unde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 Focused on the UCITA Part 2. -

Shim, Chong-Seok · Oh,
Hyon-Sok

Regarding to the contract formation and terms unde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the UCITA mentioned sec. 201~214. in part 2.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means an agreement or the performance of it to create, modify, transfer, or license computer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rights in computer information. The term includes a support contract under Section 612. The term does not include a transaction merely because the parties' agreement provides that their communications about the transaction will be in the form of computer information. In order to articles, these are formal requirements, formation in general, offer and acceptance in general, acceptance with varying terms, conditional offer or acceptance, offer and acceptance by the electronic agents, - its means a computer program, or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by a person to initiate an action, or to respond to electronic messages or performances, on the person's behalf without review or action by an individual at the time of the action or response to the message or performance. - formation for released of informational

34 經營法律

rights, adopting terms of records, mass-market license, terms of contract formed by conduct, efficacy and commercial reasonableness of attribution procedure, determining attribution, electronic error for the consumer defenses, when effect of electronic message and so on.

주제어: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 ‘컴퓨터 정보거래’(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